

[특집]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

■
안 세 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신부]

- I. 들어가는 말
- II. ‘성사들의 문’인 세례
- III. ‘죽을 위험 중에’ 세례와 다른 성사들의 연속 거행
- IV.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V. 견진 관련 지침에 대한 재고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이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흔히 ‘대세’ ‘비상 세례’ ‘임종 세례’ 등으로 불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 영성체나 고해성사나 병자성사와 같은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을까?”

본 논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여 작성되었다.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명확해서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목 일선에서는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¹⁾

1) 예를 들어, 예비신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죽을 위험 중에 있어서 가족이나 이웃에 의하여 임종 세례를 받은 자가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후 병자성사나 성체를 모시게 해 달라고 요청할 때이다. 사목자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신앙과 성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세’ ‘임종 세례’(임종 대세) ‘비상 세례’로 불려왔고 지금도 흔히 그렇게 불리는, 죽을 위험 중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집전되는 세례에 대한 개념과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²⁾ 그리고 세례를 제외한 기타 성사들의 유효하고 적법한 거행과 배령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본 논고는 이 모든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도 없고 또 다룰 수도 없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용어 사용 문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행된 세례에서 비롯하는 부수적인 그러나 사목적으로는 꽤 비중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게 될 것이다.

II. ‘성사들의 문’인 세례

1. 세례의 필요성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1257항에 요약된 내용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한다.

2) 2017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유아와 어른을 포함한 총 영세자 96,794명 가운데 5,510명이 이른바 ‘대세’를 받았다(『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p.31).

2. 세례의 교회법적 효과

구원에 필수적인 세례는 존재론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법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낸다. 그 가운데 현행 『교회법전』이 명시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언급할 수 있겠다. 먼저, “세례로 사람(homo)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persona)³⁾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 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 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한다.⁵⁾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재생” 즉 세례로 말미암아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하며⁶⁾ “거룩한 삶을 살” 의무가 있다.⁷⁾ 세례는 ‘성사들의 문’(ianua sacramentorum)이다.⁸⁾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⁹⁾

결론적으로, 세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christifideles)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와 권리가 비롯하는 기원이며 뿌리라고 할 수 있다.¹⁰⁾

3) 세례받지 않은 사람(homo)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자 공동체와 교회 권위 앞에서 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교회법적 인격” 즉 “personalitas canonica”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참조: 정진석, 『교회의 성사법』 교회법 해설 7[제834~1054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83).

4) 교회법 제96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교회법전』 전반에 걸쳐 실려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의무와 권리는 제208~2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5) 참조: 교회법 제204조 제1항.

6) 참조: 교회법 제208조.

7) 참조: 교회법 제210조.

8) 참조: 교회법 제849조.

9) 교회법 제842조 제1항.

10) 교회법 제11조도 언급해야 한다. 제11조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이들’과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 즉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고서 이

III. ‘죽을 위험 중에’ 세례와 다른 성사들의 연속 거행

1. ‘죽을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교회에서는 ‘영혼들의 구원’(salus animarum)이 항상 ‘최상의 법’(lex suprema)이어야 한다.¹¹⁾ 영혼들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원칙은 ‘사람’(homo) 특히 ‘신자’(fidelis)가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¹²⁾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된다. 현행 교회법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하여, 통상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과는 다른 예외적이고 특수한 성격의 규범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교회법전』에서 ‘죽을 위험’(periculum mortis)¹³⁾이라는 용어는 총 스물세 번 사용되며, 모두 성사 거행 및 배령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참회(고해)성사, 성찬(성체)성사, 병자성사 거행과 관련하여 한 번,¹⁴⁾ 세례성사와 관련하여 세 번,¹⁵⁾ 견진성사와 관련하여 다섯 번,¹⁶⁾ 성체성사와 관련하여 세 번,¹⁷⁾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네 번,¹⁸⁾ 혼인과 관련하여 다섯 번,¹⁹⁾ 성사 거행과 성사 배령을

후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진 이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하였다면,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1) 참조: 교회법 제1752조.

12) 1917년 『교회법전』은 ‘죽을 위험 중에’(in periculo mortis)라는 표현 외에 ‘죽는 순간’(in articulo mortis)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제468조 제2항; 제2367조 제1항). 그러나 1983년 『교회법전』은 ‘죽는 순간’보다는 더 넓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죽을 위험 중에’라는 표현만 사용한다.

13) ‘죽을 위험 중에’(in periculo mortis),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perdurante periculo mortis),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urgente periculo mortis), ‘죽을 위험이 있으면’(si adsit periculum mortis), ‘죽을 위험이 임박하면’(si imminet periculum mortis), ‘죽을 위험 외에’(extra periculum mortis) 등.

14) 참조: 교회법 제844조 제4항.

15) 참조: 교회법 제865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제868조 제2항.

16) 참조: 교회법 제530조 제2호, 제566조 제1항, 제883조 제3호, 제889조 제2항, 제891조.

17) 참조: 교회법 제913조 제2항, 제921조 제1항 및 제3항.

18) 참조: 교회법 제961조 제1항 제1호, 제976조, 제977조, 제986조 제2항.

금지하는 형벌을 중지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두 번²⁰⁾이다.²¹⁾

그 가운데 특별히 제844조 제4항, 제1335조, 제1352조 제1항 그리고 제976조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성사 교류’(communicatio in sacris)를 다루는 제844조는 제4항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가톨릭 교역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²⁾ 다음으로 제1335조는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정벌을 부과받고 있는 거룩한 교역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봐야 한다면, 그 금지는 ‘법 자체로’(ipso iure) 중지된다고 말한다.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필요로 하는 성사를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역자의 형벌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제1352조 제1항은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형벌 제재를 부과받은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다면, 이 금지는 그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동안’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이번에는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자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76조다. 제976조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느 참회자에게든지’ ‘어느 사제라도’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느 사제라도’라는 말은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 권한²³⁾이 없거나,

19) 참조: 교회법 제1068조, 제1079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20) 참조: 교회법 제1335조, 제1352조 제1항.

21) 그밖에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fidelis qui, [...] ob infirmitatem vel senium in periculo incipit versari) (병자성사: 제1004조 제1항),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된 병자’(infirmus [...] eadem infirmitate perdurante, discrimen factum gravius sit) (병자성사: 제1004조 제2항), ‘임종하는 이들’(qui in vitae discrimen adducti sint) (노자성체: 제921조 제2항)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로 간주할 수 있다.

22) 물론 교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르게 준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참조: 제844조 제4항).

23) 참조: 교회법 제966조 제1항: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관면이나 제명으로 ‘환속’한 사제라도, 더 나아가, 비가톨릭 교회의 사제라도,²⁴⁾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의 고백을 ‘유효하고 적법하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교정벌이라도’라는 말은 성좌에 유보된 교정벌이나 외적 법정에서 선언된 교정벌까지도 사면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²⁵⁾

이처럼 교회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신자라도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모시고 병자의 도유로 위로를 받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성사받는 것이 금지된 신자라도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성사받는 것’을 금지하는 그 신자의 형벌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사를 ‘거행해 주어야 할’ 거룩한 교역자가 혹시라도 받고 있는 ‘성사 거행 금지’의 형벌까지 ‘법 자체로’ 중지시켜 줌으로써, 그가 교회의 영적 도움인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죽을 위험 중에’ 세례와 다른 성사들의 연속 거행 가능성²⁶⁾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이나 신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24) 참조: 교회법 제844조 제2항. 비가톨릭 교회의 교역자들도 법규범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에게 참회(고해), 성찬(성체), 병자의 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할 수 있다.

25) 교정벌(censura)이 부과된 신자는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교회법 제1331조 및 제1332조). 따라서 논리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먼저 교정벌을 사면(remissio)해주어 그가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한 후에 죄(peccatum)를 사죄(absolutio)해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은 『고백성사 예식서』 부록 [1]에 실려 있다. 사제는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인 신자의 죄를 유효하게 사죄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다면 이 죄 역시 유효하게 사죄해 줄 수 있다(참조: 교회법 제977조).

26)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와 함께 거행할 수 있는 다른 성사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1983년 『교회법전』과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유아 세례 예식』(Ordo Baptismi Parvulorum, 2010), 『어른 입교 예식』(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2011, 시안) 그리고 『견진 예식』(Ordo confirmationis, 2015, 시안)을 참조하였다.

는 현행 『교회법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사 예식서들 특히 구원에 필수적인 세례성사의 거행과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자성사의 거행을 규율하는 예식서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세례 성사 예식서와 병자성사 예식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지켜야 할 예식(ordō 혹은 ritus) 외에도 성사 대상자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거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식(‘짧은 예식’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례성사나 병자성사만이 아니라 그 밖의 성사들도 연속해서 집전할 가능성도 내다보면서 성사들의 연속 거행 때에 지켜야 할 예식과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²⁷⁾

1) 유아 세례의 경우

교회법에서 ‘유아’(infans 또는 parvulus)는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자주 능력이 없다고 즉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²⁸⁾ 그리고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서는 자주 능력이 없는 자 즉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자는 유아와 동등시된다.²⁹⁾

『유아 세례 예식』은 유아 세례 때 사용할 예식을 세례 집전자가 ‘정규 집전자’³⁰⁾인지 ‘비정규 집전자’³¹⁾인지에 따라 크게 “집전자가

27) 여기서는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병이나 노령으로 위협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교회법 제1004조 제1항)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다만 교회는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에게 ‘고해, 견진, 병자성사’와 ‘영성체’를 연속 거행할 수 있는 예식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야 한다(참조: 『병자성사 예식: 병자의 도유와 사목적 배려』 “제4장 죽을 위험에 놓인 병자에게 성사들을 주는 예식” “제5장 죽을 위험에 놓인 병자에게 거행하는 견진 예식”). 그리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1995) 제98조(여러 성사의 연속 집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면 은사(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 영성체의 순서로 집전한다.” 다른 한편,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혼인을 거행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교회법 제1068조, 제1079조, 제1116조). 그러나 『혼인 예식서』(Ordo celebrandi matrimonium)에는 이때 따라야 할 별도의 예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8) 참조: 교회법 제97조 제2항.

29) 참조: 교회법 제852조 제2항.

30) 교회법 제861조 제1항: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거행하는 예식”(Ordo Baptismi a ministro ordinario celebrandi)³²⁾ (지침 15~19항)과 “짧은 세례 예식”(Ordo brevior Baptismi) (지침 20~22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 세례를 주례하는 자가 정규 집전자인 경우, 세례받는 유아들의 수에 따라서 “제1장 여러 명의 유아 세례 예식”이나 “제2장 한 명의 유아 세례 예식” 혹은 “제3장 아주 많은 유아들의 세례 예식”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반면에 주례자가 비정규 집전자라면 “제4장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 교리 교사가 주례하는 유아 세례 예식”³³⁾에 따라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유아가 죽을 위험에 있다면 지체 없이 세례를 주어야 한다.³⁴⁾ 『유아 세례 예식』은 이때 지켜야 할 예식을 별도로 마련한다. 만일 비정규 집전자가 주례한다면 “제5장 사제나 부제가 없고 위급할 때 거행하는 유아 세례 예식”에 따라 세례를 준다. 그런데 지침 22항은 사제나 부제같은 정규 집전자가 세례를 주례할 때에도 ‘사

31) 참조: 교회법 제861조 제2항.

32) 라틴어 표준판에는 “Ordo Baptismi a ministro ordinario celebrandi”라고 되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규 집전자가 거행하는 세례 예식”이 된다. 세례의 정규 집전자(minister ordinarius)는 주교, 탁덕, 부제이고, 정규 집전자가 아닌 이들은 모두 비정규 집전자(minister extraordinarius)이다(예: 교리교사, 교구 직권자가 이 임무에 위탁한 다른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자이든 아니든 합당한 지향을 가진 자). 그런데 비정규 집전자도 집전자(minister)이다. 『유아 세례 예식』 “제5장 사제나 부제가 없고 위급할 때 거행하는 유아 세례 예식”(167~164항)에서도 이 예식에 따라 세례를 주는 사람을 ‘minister’(한국어판에서는 ‘주례’라고 번역한다)라고 부른다. 따라서 『유아 세례 예식』(한국어판, 2010)의 “가. 집전자가 거행하는 세례 예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같은 현상이 『유아 세례 예식』 지침 21항의 “유아가 죽을 위험이 있고 집전자가 없을 때 사용하는 유아 세례 예식은 두 가지 구조를 갖는다”라는 문장에서도 발견된다. 이 구문에서 우리말 “집전자가 없을 때”의 라틴어 원문은 “absente ministro ordinario”이므로, 정확한 번역은 “정규 집전자가 없을 때”가 될 것이다.

33) 『유아 세례 예식』 지침 21항은, “유아가 죽을 위험이 있고 정규 집전자가 없을 때” 사용하는 “짧은 세례 예식”은 두 가지 구조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죽음이 임박하여 시간을 다투는 때’에 사용하는 방식과 ‘현명하게 판단하여 시간이 넉넉한 때’ 사용하는 방식을 구분한다. ‘죽음이 임박하여 시간을 다투는 때’에는 다른 예식을 생략하고 세례수나 축복하지 않은 자연수를 유아의 머리에 부으며 세례 양식문을 외운다.

34) 참조: 교회법 제867조 제3항.

목적 판단'에 따라 이른바 “짧은 예식”(Ordo brevior)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지침 22항은 “유아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대등한 권한을 가진 사제가 축성 성유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세례를 준 다음에 견진성사까지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가 아니더라도 죽을 위험에 있다면 그에게 견진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교회법 제891조와도 부합하고,³⁵⁾ “죽을 위험에 있거나 다른 중대한 곤경에 놓인 어린이들은 이성을 사용하기 전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견진을 주어 성사의 선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견진 예식』 지침 11항과도 부합하다.³⁶⁾ 『유아 세례 예식』 자체에는 죽을 위험에 있는 유아에게 견진을 줄 때 사용해야 할 별도의 예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때에는 세례 예식 다음에 축성 성유 도유는 생략한다”(지침 22항)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³⁷⁾

죽을 위험에 있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때 ‘거의 의무적으로’ 견진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아 세례 예식』에는 유아에게 영성체를 거행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첫영성체는 ‘이성의 사용을 해야만’ 즉 7세를 채워야만 할 수 있다는 교회법 제914조의 규정과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35) 교회법 제891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9조 제2항도 참조하시오.

36) 『가톨릭교회 교리서』 1307항은 죽을 위험 중에는 7세 미만의 신자라도 견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수 세기에 걸쳐 라틴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죽을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아이라도 견진성사를 주어야 한다.”

37) 이때는 『견진 예식』 “제4장 죽을 위험에 있는 병자에게 집전하는 견진 예식”(52-56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8) 교회법 제913조 제2항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유아’(infans)의 영성체

죽을 위험 중에 세례받은 유아가 나중에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유아 세례 예식』 “제6장 대세³⁹⁾받은 유아를 교회에 받아들이는 예식”(Ordo deferendi ad ecclesiam parvulum iam baptizatum)에 따라 그를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예식에는 견진을 수여하거나 성체를 모시게 해 주는 것과 관련된 지침이 없다. 이는 ‘죽을 위험 외’의 상황, 즉 통상적 상황에서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에 이르러야 견진을 받을 수 있고,⁴⁰⁾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르고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를 해야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교회법 규범과 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2) 어른 세례의 경우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서 ‘어른’(adultus)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⁴²⁾ 그러나 7세를 채웠 다 하더라도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어른이 아닌 ‘유아’(infans)와 동

가 아닌 ‘어린이’(puer)의 영성체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7세를 만료하지 않은 ‘유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어린이’(puer)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곧바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39) 『유아 세례 예식』(한국어판, 2010)은 ‘대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비정규 집전자가 주례한 세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즉 “종교 박해 중이나 부모의 일시적 의견 차이” 때문에 “성당에서” 거행되는 예식에 따라 거행하지 못했던 세례, 즉 “성당 밖에서”(extra Ecclesiam)[참조: *Communicationes* 3(1971), 201] 집전되었던 세례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참조: 『유아 세례 예식』 지침 31항과 185항). “제6장 대세받은 유아를 교회에 받아들이는 예식”이 사용하는 라틴어 원문도 ‘parvulus privim baptizatus’(사사로이 세례받은 유아) (1917년 『교회법전』 제737조 제1항; 제759조 제1항)가 아니라 ‘parvulus iam baptizatus’(이미 세례받은 유아)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주교용어위원회, 『천주교 용어집』(개정 증보판), 2017, p.30은 ‘대세’(baptismus privatus)를 설명하면서 “평신도 등 비정규 집전자가 주는 임종 세례를 예전에는 ‘대세’ 또는 ‘임종 대세’라고 불렀다”라고 말한다. 같은 책에 의하면, ‘임종 세례’(baptismus in proximo periculo vel in articulo mortis)는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 간략한 예식으로 주는 세례로, 주로 교리 교사 등 평신도가 집전하지만, 사제나 부제도 집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p.109).

40) 참조: 교회법 제891조, 제889조 제2항.

41) 참조: 교회법 제913조 제1항, 제914조.

42) 참조: 교회법 제852조 제1항.

등시된다.⁴³⁾ 『교회법전』과 전례 예식서들은 ‘어린이’(puer)라는 용어도 사용한다.⁴⁴⁾ 이때의 ‘어린이’는 7세를 만료하여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되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는 『어른 입교 예식』 “제1장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Ordo catechumenatus per gradus dispositus)이나 “제2장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Ordo simplicior initiationis adulti)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면, 『어른 입교 예식』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Ordo initiationis puerorum qui aetatem catechetica adepti sunt)을 준수한다.⁴⁵⁾

그러나 세례받을 어른이 ‘죽을 위험에 있거나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제3장 임종 세례”(Ordo brevior initiationis adulti in proximo periculo vel in articulo mortis adhibendus)라는 ‘짧은 예식’을 사용한다.⁴⁶⁾

‘임종 세례’를 받은 어른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

43) 참조: 교회법 제852조 제2항.

44) 참조: 교회법 제528조 제1항, 제776조, 제777조 제2호 및 제3호, 제795조, 제913조, 제914조; 『어른 입교 예식』 지침 46항,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306-369항); 『결진 예식』 지침 11-13항.

45) 『어른 입교 예식』 306항은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은 “유아 때 세례를 받지 못하고, 분별 있고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이 입교하려 할 때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aetas catechetica) 또는 ‘분별 있는 나이’(aetas discretionis)는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와 동등시되며 만 7세를 가리킨다.

46)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16항은 ‘임종세례’ 때 지킬 이 예식을 가리켜 “ordo brevior”라고 부른다. 한국어판에서는 이를 “약식 세례 예식”이라고 번역한다. 분명한 점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어른 입교 예식 때 사용하는 이른바 ‘ordo simplicior’(간략한 예식)과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에게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ordo brevior’(짧은 예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7년 『교회법전』은 ‘예식서에 규정된 모든 예식과 예절을 지켜 거행된 세례’를 ‘baptismus sollemnis’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세례를 ‘baptismus non sollemnis’ 즉, ‘privatus’라 부르고 있었다(제737조). 그러나 현행 『교회법전』은 더 이상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Tomás Rincón-Pérez, *La liturgia e i sacramenti nel diritto della Chiesa*, EDUSC, 2014는, ‘전례 행위는 외적으로 장엄하게 거행되었는 지와 관계없이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고’(p.154), ‘현행 예식서는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때 따라야 할 예식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p.160)이라고 말한다.

때 그는 “제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교리교육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진다. 이 예식은 본디 ‘어려서 세례를 받은 다음 교리를 받지 못하여 견진도 성체성사도 받지 못한 어른’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⁴⁷⁾

흥미로운 점은, 현행 『어른 입교 예식』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죽을 위험이 있을 때이든 ‘어른들’이나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기본적으로 세례와 함께 견진과 영성체를 연속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예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사 예식서 특히 『어른 입교 예식』과 『견진 예식』이 어른들의 ‘예비신자 기간’(catechumenatus)과 ‘그리스도교 입문’(입교)(*initiatio christiana*) 과정을 복구하기 바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의 뜻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이다.⁴⁸⁾ 이 두 예식서들과 함께 현행 『교회법전』 역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initiationis christianae sacramenta)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성사들의 단일성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이 성사들이 같은 전례 행위 안에서 거행됨으로써 ‘그리스도교 입문’이 ‘완결’(완성)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다.⁴⁹⁾

47) “아래의 사목 지침은 어려서 세례를 받은 다음 교리를 배우지 못하여 견진도 성체성사도 받지 못한 어른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죽을 위험이 있거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세례를 받은 어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 295항).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세례를 받은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이들에게 알맞은 교리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적절한 시기에 교회에 받아들여 어른 입교의 다른 성사들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295-305항(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에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면서 알맞게 적용하여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 282항).

48) 참조: 『전례헌장』 64항, 71항; 『선교교령』 14항.

49)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교회법 제842조 제2항). “세례받은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6조). 예식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1항, 2항; 『어른 입교 예식』 지침 27항, 지침 34항, 지침 36항, 지침 46항, 242항, 280항, 304항; 『견진 예식』 지침 11항, 지침 13항, 52항을 참조하시오.

이러한 이유에서, 『어른 입교 예식』 280항은 죽을 위험에 있는 어른에게 “제3장 임종 세례”에 규정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 때, 상황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그에게 견진도 주고 성체도 받아 모시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⁰⁾

3. 연속 거행을 위한 조건: 집전자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행 『교회법전』과 예식서들은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대상자가 ‘유아’인 경우에는 견진까지, 그리고 ‘어른’(만 7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어린이’도 포함)인 경우에는 견진과 영성체까지 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성사들의 연속 거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식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률 행위가 그러하듯이,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때에도 행위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위하여 법규범이 정한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성사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질료’(materia)와 ‘형상’(forma)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세례, 견진, 성체성사들의 연속 거행이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위해 현행 교회법과 예식서에 규정된 조건들을 ‘집전자’와 ‘대상자’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집전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견진과 영성체를 함께 거행할 수 있으려면 집전자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세례와 관련하여, 죽을 위험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주교, 타덕, 부제)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⁵¹⁾ 특히 교회

50) 『어른 입교 예식』 280항: “세례를 주는 신부가 축성 성유를 지니고 있고 시간도 넉넉하다면 세례를 준 다음 빠뜨리지 말고 견진도 주어야 한다. 이때에는 축성 성유로 하는 세례 후 도유(263항)는 생략한다. 마찬가지로 되도록 신부나 부제, 또한 적절하다면 비정규 성체 분배 권한을 가진 교리 교사나 평신도는 새 신자가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하여야 한다.” 『어른 입교 예식』 293항은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한다: “신부가 세례를 준다면 그가 견진도 줄 수 있다.”

법 제861조 제2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비수품 신자(교리 교사 등)를 비정규 세례 집전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⁵²⁾ 결론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례와 더불어 견진도 수여할 수 있으려면 집전자는 반드시 ‘사제’(sacerdos)여야 한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episcopus)이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presbyter)도 견진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고,⁵³⁾ 더욱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라도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이 ‘법 자체로’(ipso iure) 있다.⁵⁴⁾ 따라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사제품의 인호를 가진 자라면 그는 견진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제나 평신도는 세례만 줄 수 있을 뿐, 견진은 줄 수 없다.

세례와 더불어 영성체를 거행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합당한 자격

51) 참조: 교회법 제861조 제2항.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16항도 참조하시오: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에, 또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어느 신자나, 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례를 주어야 한다. 신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죽을 위험에 있을 때만 다음(어른 입교 예식 278~294항; 유아 세례 예식 157~164항)에 수록된 약식 세례 예식(ordobrevior)에 따라 세례를 주어야 한다.”

52) 제230조 제3항도 참조하시오. 평신도를 비정규 세례 집전자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직자성, 평신도평의회,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수도회성, 교회법해석평의회가 1997년 8월 15일 공동으로 발표한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Ecclesiae de Mysterio), AAS 89(1997), 852~877을 참조하시오. 훈령의 “제11절 세례 집전자”에서는 『교회법전』의 규범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그와 같은 권한이 통상적으로 위임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환기한다.

53) 참조: 교회법 제882조.

54) 참조: 교회법 제883조 제3호. 『유아 세례 예식』과 『어른 입교 예식』 그리고 『견진 예식』도 교회법 규범과 부합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참조: 『유아 세례 예식』 지침 22항; 『어른 입교 예식』 280항, 293항; 『견진 예식』 지침 7항. 『견진 예식』에는 “제4장 죽을 위험에 있는 병자에게 집전하는 견진 예식”(52~56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 요구된다.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고,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교회법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이다.⁵⁵⁾ 따라서 정규 집전자와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가진 교리 교사나 평신도만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 후에 그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할 수 있다.⁵⁶⁾

종합해서 말한다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 견진, 영성체를 연속 거행할 수 있으려면 집전자가 주교이거나 적어도 사제여야 한다. 만일 부제나 비정규 성체 분배권을 가진 평신도가 집전자라면 그는 세례를 거행하고 성체를 모시게 할 수는 있지만 견진은 줄 수 없고, 비정규 성체 분배권이 없는 평신도가 집전자라면 오직 세례만 베풀 수 있다.

2) 대상자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곧바로 견진도 받거나 성체를 모실 수 있으려면 성사 대상자 편에서도 합당한 자격이 요구된다.

먼저 세례와 관련하여, 세례는 인호를 새겨주므로 반복될 수 없다.⁵⁷⁾ 따라서 유아이든 어른이든 세례받을 자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⁵⁸⁾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받을 수 있다.⁵⁹⁾ 죽을 위험에 있는 자가 유아라면, 그는 지체 없이 세례받아야 한다.⁶⁰⁾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55) 참조: 교회법 제910조. 교회법 제230조 제3항은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교역자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평신도들은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서』에 따라 성체 분배권을 수여 받는다.

56) 참조: 『어른 입교 예식』 280항.

57) 참조: 교회법 제845조 제1항.

58) 세례받았는 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이 있을 때는 교회법 제869조와 제870조의 규범을 준수한다.

59)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omnis et solus homo) 세례받을 수 있다”(교회법 제864조).

60) 참조: 교회법 제867조 제2항.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71조).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받을 수 있다.”⁶¹⁾ 죽을 위험에 있는 자가 어른이라면, 그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⁶²⁾

두 번째로 견진과 관련하여, 견진도 세례처럼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⁶³⁾ 따라서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견진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baptizatus)이어야 한다.⁶⁴⁾ 일반적인 상황에서 견진을 ‘적법하게’(licite) 받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대략 7세)이어야 하고,⁶⁵⁾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⁶⁶⁾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때에는 이와는 다른 규범이 적용된다. 유아이든 어른이든 죽을 위

61) 교회법 제868조 제2항.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 세례를 적법하기 거행하려면 부모 양편이나 한편이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하고,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68조 제1항).

62) 참조: 교회법 제865조 제2항. 『어른 입교 예식』 279항은 더 구체적으로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진 이’와 ‘예비신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진 이라면 기력을 회복한 다음 통상적인 교리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여야만 한다. 예비신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리고 미신을 끊어 버린다는 진지한 표시를 보여야 하며, 생활에 윤리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중혼’ 등). 더 나아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 자신에게 알맞은 모든 입교 과정을 밟겠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그와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제1항).

63) 참조: 교회법 제845조 제1항.

64)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omnis et solus baptizatus)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교회법 제889조 제1항).

65) 참조: 교회법 제891조. 이 조문은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가 수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교회의가 견진 적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V. 견진성사 관련 지침에 대한 제고, 3. 견진 적령 문제’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66) 참조: 교회법 제889조 제2항; 『견진 예식』 지침 12항.

험에 있는 영세자가 견진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서는, 비록 교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분별력을 가질 나이, 적절한 교육, 올바른 준비, 세례 때의 약속 갹신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견진을 받을 수 있다.⁶⁷⁾ 다만 『견진 예식』 지침 12항은 “이성을 사용하고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에게 견진을 줄 때에는 그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알맞은 영신적 준비를 시켜야 한다”라고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영성체와 관련하여, 현행 교회법은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⁶⁸⁾는 원칙을 천명한 후,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나열한다. 먼저,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⁶⁹⁾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⁷⁰⁾ ‘어린이들’(pueri)의 경우,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를 해야 한다.⁷¹⁾ 그리고 자신의 중죄를 자각하는 자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⁷²⁾ 이 모든 것을 신학적 언어로 종합한다면, “영성체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⁷³⁾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례받은 자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는 조금 전 언급한 적법한 성체 배령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보다는 조금 덜 까다로운 규범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영성체의 가능

67) 교회법 제889조 제2항과 제891조는 적법한 견진 거행 및 배령을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면서도, ‘죽을 위험’은 예외로 둔다.

68) 교회법 제912조.

69)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회법평의회,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 허용에 대한 선언,” 2000.6.24., *Communicationes* 32(2000), 159-162를 참조하시오.

70) 교회법 제915조.

71) 참조: 교회법 제913조 제1항.

72) 참조: 교회법 제916조.

73)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415항.

성에 대해서는 현행 『교회법전』도 성사 예식서들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가 죽을 위험에 있다면 그에게 성체를 모시게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⁷⁴⁾ 어른이 죽을 위험에 있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성체를 모시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른 입교 예식』 280항은 ‘임종 세례’ 때 따라야 할 예식을 규정하면서 “되도록이면 [...] 새 신자가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 죽을 위험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확인되었기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새 신자’(neophytus)⁷⁵⁾는 성체를 받아 모실 정당하고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⁷⁶⁾ 특히 죽을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 교회가 드러내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고려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현행 『교회법전』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하며,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라고 규정한다.⁷⁷⁾ 또한 사목자들에게는 ‘병자를 위한 노자성체를 너무 미루지 말도록’ 권고하며,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다.⁷⁸⁾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

74) 참조: 교회법 제913조 제2항.

75) 참조: 『어른 입교 예식』 280항은 임종 세례를 받은 자를 ‘새 신자’(neophytus)라고 부른다.

76)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912조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한다.

77) 참조: 교회법 제921조. 『병자성사 예식: 병자의 도유와 사목적 배려 예식』 지침 27항은 병자의 영성체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욱 명시적으로 말한다: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자 성체를 받을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어떤 이유로든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영성체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78) 참조: 교회법 제922조.

중에 세례받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아 누구보다 더 ‘은총의 상태’에 있는 ‘새 신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본다면, 유아이든 어린이이든 어른이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는 견진성사까지 유효하고 적법하게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아에게는 성체를 모실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른을 포함해 만 7세 이상의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다.

IV.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1. 교회의 의무와 권리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어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이다.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베풀어진다.⁷⁹⁾ 그리고 성사들은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준다. 은총을 가져다주는 성사들의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주며,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기여한다.⁸⁰⁾ 성사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동시에 교회의 행위이다.⁸¹⁾

교회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은총을 가져다주는 표징과 도구인 성사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생명과 은총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이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당신의 성사들을 맡기셨다. 따라서

79)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131항.

80) 참조: 『전례헌장』 59항.

81) 참조: 교회법 제840조.

교회는 실제로 성사들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충만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사들을 정의에 따라 거행하고 또 올바르게 거행할 의무가 있다.⁸²⁾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성사들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 그리스도께서 성사들을 세우시면서 그 집전을 여타의 단체나 조직에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아닌 교회에 위탁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사들이 그 제정자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거행되고 보존되도록 요구할 권리와, 모든 사람이 성사들을 받을 때 합당한 준비를 함으로써 마땅한 존중을 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회가 성사들의 유효 요건 및 적법한 거행과 집전과 배령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⁸³⁾

2. 신자의 의무와 권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은총을 무상으로 베풀어주시며, 특히 성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는 인간이 당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성사들의 문’인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합체된 신자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과 하나 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은총을 특히 성사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아니, 세례로 신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느님의 백성은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⁸⁴⁾

82) 경신성사성,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에 관한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3.25., AAS 96(2004), 549~601은 특히 성체성사 거행에서 사제가 전례서에 규정된 대로 집전할 의무는, “전례, 특히 거룩한 미사 거행이 전례서와 그 밖의 다른 법률과 규범들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교회가 바라는 대로 참되게 이루어지게 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권리”에 상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신자들은 올바르게 성사가 거행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11~12항 참조).

83) 참조: 교회법 제841조, 제838조.

84) 참조: 『교회헌장』 49항.

신자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성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을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⁸⁵⁾

현행 『교회법전』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제208~223조)를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⁸⁶⁾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⁸⁷⁾ 특히 성사를 직접으로 다루고 있는 제843조 1항은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⁸⁸⁾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idelis)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들만 성사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성사들의 문’인 세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omnis homo)이 일종의 ‘권리’(ius)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⁸⁹⁾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은 오직 세례를 받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로 준비하고 법으로 금지당하

85) 하느님의 은총은 무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성사를 청하고 받을 ‘신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말할 때,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닌,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무상으로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86) 교회법 제212조 제2항.

87) 교회법 제213조. 『교회현장』 37항도 참조하시오.

88) 현행 『교회법전』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성사가 제 때에 그리고 올바르게 거행 되도록 보살필 의무를 특히 ‘영혼의 목자들’(pastores animarum),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omnis cui animarum cura est demandata)에게 부과한다. 대표적으로는, 교구장 주교(제387~389조)와 본당 사목구 주임(제528조 제2항, 제529조 제1항, 제530조, 제777조)에게 부과한다. 그 외에도 개별 성사의 집전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세례성사와 관련하여, 제861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제870~871조, 견진성사와 관련하여, 제885조, 제890조, 제891조, 노자성체와 관련하여, 제911조, 제921~922조, 영성체와 관련하여, 제914조,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제986조, 병자성사와 관련하여, 제1001조, 제1003조, 제1005~1006조가 그러하다.

89) 참조: 『교회현장』 14항.

지 않고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⁹⁰⁾

다른 한편, 성사들을 청하고 받을 신자들의 권리는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성사들과 그 거행에 대하여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⁹¹⁾ 따라서 성사들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복음화와 교리교육으로 성사받을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⁹²⁾ 교회가 각 성사의 유효 요건으로 승인하고 확정된 것을 존중해야 하며, 올바르게 합당한 성사 배령을 위해 요구되는 외적·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달리 말해 신자들이 유효하고 적법하고 합당하게 성사를 받기 위해 법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성사 거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⁹³⁾

3. 성사 거행에서 '정의'

은총의 표징이며 도구인 성사들을 거행할 때, 교회는 그 수혜자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권리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을 성사들을 통해 받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사들의 수탁자요 분배자인 교회의 권리를 늘 기억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성사 거행은 구체적으로 성품성사의 인호를 받은 '거룩한 교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90) 참조: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125와 p.156.

91) 참조: 교회법 제840조.

92) 참조: 교회법 제843조 제2항. 죽을 위협에 있을 때 '성사들의 문'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른 입교 예식』 294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을 위협 가운데 입교 성사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병자가 어찌다 기력을 회복하게 되면, 통상적인 교리교육과 다 받지 못했던 성사나 예식의 나머지 부분을 받아야 한다(279. 295~305항).”

93) 유효하고 적법하고 합당한 성사 배령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다음을 참조하시오: 세례성사를 받을 자(제864~865조, 제868조, 제869조), 견진성사를 받을 자(제889~891조), 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제912~917조, 제919조), 참회자(제980조, 제982조, 제987조), 병자성사를 받을 자(제1007조), 수품 후보자(제1024~1053조), 혼인(제1073~1107조).

‘거룩한 교역자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는 ‘정의’(正義, iustitia)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⁹⁴⁾

거룩한 교역자들 특히 ‘영혼들을 돌볼 임무가 위탁된 사목자들’은 성사를 청하는 이가 올바르게 준비하고, 법으로 성사받기를 금지당하지 않고, 합당하게 청하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고,⁹⁵⁾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사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위해 교회의 법규범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올바르게 준비하고 법으로 성사받기를 금지당하지 않았으며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는 이에게 성사 집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⁹⁶⁾ 교회의 법규범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거룩한 교역자로부터 성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성사 거행에서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 18일 경신성사성이 어느 개별 교회의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 서한 형식의 답변에는 꽤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⁹⁷⁾ 서한은 11세 어린이의 부모가 견진 적령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구 지침에 불복하여 경신성사성에 제기한 소원을 다룬다. 이 서한에서 경신성사성은 견진 적령을 정하는 일이 주교회의의 소임인 것은 맞지만,⁹⁸⁾ 개별법은 보편법의 일반 규범인 교회법 제843조 제1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성사받을 신자의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한은 또한 견진받을 연령을 ‘이성의 사용을 할 나이’보다 더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견진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겠지만, 신자들은 꽤 오랜 기간 견진의 은총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도 상기시킨다.

94) 참조: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p.115~127.

95) 참조: 교회법 제843조 제1항.

96) 참조: 교회법 제843조 제1항.

97) 경신성사성, “서한”(Prot. N. 2607/98/L), 1999.12.18., *Nuntia* 35(1999), 537~540.

98) 참조: 교회법 제891조.

4. ‘예비신자’와 ‘영세자’의 법적 지위

경신성사성의 답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성사를 거행하는 교회’와 ‘성사를 받는 신자’ 사이에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이 법률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람’(homo)이 세례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persona)가 될 때 정식으로 성립된다.⁹⁹⁾ 그러나 ‘권리-의무’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는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일례로 ‘예비신자’(catechumenus)를 들 수 있다. 예비신자들은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는 이들이기에,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그들을 ‘자기 회원들로서’(ut suos) 간주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은을 베풀고,¹⁰⁰⁾ 구원의 신비에로 입문시키고 신앙과 전례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한다.¹⁰¹⁾ 그리고 장례식에 관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기며¹⁰²⁾ 축복도 허용한다.¹⁰³⁾ 각 주교회의는 예비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일종의 ‘의무’)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일종의 ‘권리’)이 어떤 것인지 규정할 소임이 있다.¹⁰⁴⁾ 만일 예비신자가 입교 과정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면 그는 세례받을 권리를 가진다.¹⁰⁵⁾

99) 참조: 교회법 제96조.

100) 참조: 교회법 제206조.

101) 참조: 교회법 제788조 제2항.

102) 참조: 교회법 제1183조.

103) 참조: 교회법 제1170조.

104) 참조: 교회법 제788조 제3항.

105) 예비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벨라시오 데 파울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pp.289~294를 참조하시오.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합체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에 합체되고자 했던 어린이와도 교회는 일종의 ‘법률관계’를 맺는다. 교회법 제1183조 제2항은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도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에게 교회 장례식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예비신자들까지도 이처럼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돌본다면, 세례로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례로, 『어른 입교 예식』의 “제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295~305항)에서는, 이 예식이 ‘어려서 세례를 받은 다음 교리를 배우지 못하여 견진도 성체성사도 받지 못한 어른들에 관한 것’이지만, 비슷한 경우 ‘특히 죽을 위험이 있거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세례를 받은 어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295항), 이들에게 교리교육을 하고 견진과 영성체를 준비시킬 책임이 있는 사제, 부제나 교리교사에게 이 어른들이 “이미 교회에 입문하였고”(295항), “이미 세례의 선물을 받았으며”(297항), “이미 세례의 인호를 받은 사람들”(300항)이므로 그들의 신분은 예비신자들의 신분과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기억하라고 권고한다.¹⁰⁶⁾

죽을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영세자’(iam baptizatus)이고,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iam christifidelis)이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합체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된 그는,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persona)이다.¹⁰⁷⁾ 그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 목자들에게

106) “아래의 사목 지침은 어려서 세례를 받은 다음 교리를 배우지 못하여 견진도 성체성사도 받지 못한 어른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죽을 위험이 있거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세례를 받은 어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어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분은 이미 교회에 입문하였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비신자들의 신분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이미 받은 세례에 바탕을 두고 그 세례의 효력이 그 회개를 완성시켜 가야만 한다”(295항). “이러한 어른들의 교리교육 순서는 흔히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순서에 상응한다(『어른 입교 예식 지침』, 9항 1 참조). 그러나 이 순서와 관련하여, 사제, 부제나 교리 교사는 이미 세례의 선물을 받은 그들의 특별한 신분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한다”(297항). “여러 전례 거행으로 준비 기간을 거룩하게 한다. 그 첫째는 이러한 어른들을 신자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예식이다. 이들은 이미 세례의 인호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300항).

107) 참조: 교회법 제96조. 이 법조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 그는 더는 ‘사람’(homo)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persona)가 된다.

표명할 자유가 있고,¹⁰⁸⁾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¹⁰⁹⁾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법전의 조문과 예식서의 지침은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만이 아니라 견진도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가 유아가 아닌 ‘어린이’나 ‘어른’이라면 영성체도 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그가 받은 세례에서 비롯한 ‘새로운 신분’과 ‘신자로서의 권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새 신자’는 자신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고,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도움을 받을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¹¹⁰⁾

물론 성사를 청하는 이들은 ‘올바로 준비하고, 법으로 성사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당하게 청하여야 한다.’¹¹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와 교리교육으로 성사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는 “영혼의 목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고,¹¹²⁾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할 의무는 특히 본당 사목구주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¹¹³⁾

108) 참조: 교회법 제212조 제2항.

109) 참조: 교회법 제213조.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Hongkong, 1932, 237항은, 세례를 ‘장엄 예식’으로 받지 아니한 신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충 예식이 아직 거행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성사들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세자가 성사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세례 때 생략된 예식을 보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Caeremoniis nondum suppletis, alia sacramenta administrare licet; sed magis convenit, extra casum necessitatis, ut caeremoniae omissae in baptismo suppleantur priusquam baptizatus sacramentaliter confiteatur).

110) 따라서 단순히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신자’인 그에게 병자성사나 영성체 거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 신자가 필요로 하는 은총을 박탈하는 일일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

111) 참조: 교회법 제843조 제1항.

112) 참조: 교회법 제843조 제2항.

113) 참조: 교회법 제777조 제1호. 교구장 주교에게도 “하느님의 신비의 주요한 분배자이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사들의 거행으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

V. 견진 관련 지침에 대한 재고

본 논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국천주교회에서 ‘성사받을 신자들의 권리’가 법규범에 따라 행사되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견진성사에 관한 지침 가운데 재고 할 필요가 있는 몇몇 사안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¹¹⁴⁾ 구체적으로 ‘견진 집전자’와 ‘견진 적령’에 관한 문제를 ‘그리스도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과 ‘성사받을 신자들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견진에 따라 개정된 예식서들, 공의회는 가르침을 교회법적 언어로 바꾼 1983년 『교회법전』, 교회법전의 입법자가 직접 마련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교황과 교황청 문헌들은 ‘그리스도교 입문’과 ‘입문 성사들’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기 때문에,¹¹⁵⁾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unitas)은 지켜져야 한다”¹¹⁶⁾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영세자들은 모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며 파스카 신비를 인식하고 생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387조, 제777조와 제835조 제1항도 참조하시오). 2007년 7월 19일 광주대교구 “교구장 사목서한”은 “대세를 받은 신자에게 영성체가 가능한가?” “대세자에게 장례미사를 해 줘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대세를 받은 사람도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과 그가 다른 성사들(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을 청할 때 사목자는 ‘이 성사들에 관한 교리가 선행’되도록 보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114) 본 논고에서는 ‘그리스도교 입문’(initiatio christiana) 과정과 이와 결부된 ‘예비신자 기간’(catechumenatus)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115)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2항.

116)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285항.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 것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없이도 세례성사는 유효하며 효과가 있지만, 그리스도교 입문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¹⁷⁾

1983년 『교회법전』은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라고 말하면서¹¹⁸⁾ 특히 “세례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¹¹⁹⁾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은 예식서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 가지 입교 성사들은 서로 결합되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¹²⁰⁾ “로마 전례가 고유하게 간직해

117)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306항.

118) 참조: 제842조 제2항. 이 조문의 법원(法源)인 『전례헌장』 7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견진 예식 또한 그리스도교 입교 전례와 이 성사의 밀접한 연결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119) 참조: 교회법 제866조. 동방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은 성사 받는 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즉 유아에게든 어른에게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전례 예식에서 연속적으로 거행된다.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이 신학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전례적·사목적 차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동방교회법전』 제695조 제1항: “견진(거룩한 미론의 도유)은 세례와 함께 집전되어야 한다. 다만 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때에도 견진이 되도록 빨리 집전되도록 돌봐야 한다”; 제697조: “구원의 신비에서 성사적 입문은 영성체를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영성체는 자치 교회의 개별법 규범에 따라 세례와 견진 이후 되도록 빨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집전되어야 한다”; 제710조: “유아들이 세례와 견진(거룩한 미론의 도유)을 받은 후에 영성체에 참여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자치 교회의 고유 전례서의 규정을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준수해야 한다.” 동방 교회들에서 유아의 영성체는 일반적으로 포도주의 형상으로만 집전된다[참조: *Nuntia* 2(1976), 13]. 부득이한 경우에 부제나 평신도가 세례를 주었다면, 사제는 견진(거룩한 미론의 도유)을 되도록 빨리 집전해야 한다[참조: *Nuntia* 2(1976), 13].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방 교회에서는 유아와 어른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일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와 어른 모두, 자연적 탄생 때 ‘옛 아담’에 속했던 한 인간 존재가 세례와 견진과 지성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인도된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행위이다”(Dimitrios Salachas, *L'iniziazione cristiana nei Codici orientale e latino*, EDB, Bologna, 1991, p.53).

120)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2항.

온 오랜 관습에 따라 어른들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세례에 이어서 곧바로 견진성사를 받는다.” 왜냐하면 “두 성사의 이러한 연결은 파스카 신비의 단일성과, 성자의 파견과 성령 강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고, 두 위격 곧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함께 세례받은 이들에게 오시는 두 성사, 곧 세례와 견진의 결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¹²¹⁾ 세례와 견진성사를 거행한 이후에는 성찬례를 거행한다. “새 신자들은 이날 처음으로 완전한 권리를 지니고 성찬례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그들의 입교 과정이 완결(consummatio)”되기 때문이다.¹²²⁾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 지닌 단일성 때문에 세례만이 아니라 견진도 미사(성찬례) 때 거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그리스도교 입문 전체와 이 성사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견진받은 이들은 자신의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켜 주는 성찬례에 참여한다.”¹²³⁾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은 단순히 교의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으로만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실천적인 차원 즉, 시간적으로나 전례 거행적인 차원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어른 입교 예식』 지침 4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른이나 교리교육을 받을 연령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는 신부는 주교가 없거나 견진을 다른 때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면 [...] 견진도 주어야 한다.” 같은 의미로 『견진 예식』 지침 11항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어른 예비신자들과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관습에 따라 세례를 받은 다음 곧바로 견진과 성체성사를 받도록 한다. [...] 어려서 세례를 받은 어른들은 알맞은 준비를 한 다음

121) 참조: 『어른 입교 예식』 지침 34항.

122) 참조: 『어른 입교 예식』 지침 36항.

123) 참조: 『견진 예식』 지침 13항. 그리고 『어른 입교 예식』 344항도 참조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성찬례 중에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1321항).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를 완결 짓는다”(1322항).

공동 거행 때 견진과 성체성사를 받도록 한다.”

다른 한편, 앞서 보았듯이, 교회는 유아이든 어린이이든 어른이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후 즉시 견진을 주도록 권장한다. 이는 세례와 견진이 신학적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성사들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견진 집전자에 관한 문제

보편법에 의한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 탁덕, 부제이다.¹²⁴⁾ 그러나 ‘세례의 집전’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맡겨져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이므로,¹²⁵⁾ 통상적인 상황에서 유아와 어른에게 세례를 주는 교역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될 것이다. 다만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¹²⁶⁾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는 ‘특별 권한’ 제1조에 의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¹²⁷⁾

다른 한편, 보편법에 의한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¹²⁸⁾

124) 참조: 교회법 제861조 제1항.

125) 참조: 교회법 제530조 제1호.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사목을 수행하는 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이다(교회법 제515조, 제519조).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탁덕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참여자들로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고 백성을 성화하도록 주교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로 축성”된다(교회법 제835조 제2항).

126) 참조: 교회법 제863조.

127)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조(어른 세례):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구장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교구에서는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제63조 제1항도 참조하시오.

128) 견진의 집전자인 주교와 관련하여, 『교회헌장』 26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2항 그리고 『견진 예식』 7항은 ‘minister originarius’(원집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행 『교회법전』은 신학적 성격을 지닌 ‘minister originarius’라는 용어보다는 법적 성격을 지닌 ‘minister ordinarius’(정규 집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그러나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견진을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¹²⁹⁾ 보편법에 따라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ipso iure) 가지는 이들에는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는 탁덕’도 포함된다.¹³⁰⁾ 다시 말해,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해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는 탁덕’은 ‘보편법 자체로’(ipso iure universalis)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6조 1항에 의해,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때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다.¹³¹⁾ 따라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조에 힘입어 교구장 주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서¹³²⁾ ‘보편법 자체’로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일지라도, 견진 집전을 주교에게 유보시키고 있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6조 1항의 규정으로 인해¹³³⁾ 실질적으로는 보편법이 부여하고 있는 견진 집

교회법전 개정위원회, *Communicationes* 3(1971), 204, Caput I *De ministro confirmationis*].

129) 참조: 교회법 제882조.

130) 참조: 교회법 제883조 제2호.

131) 견진성사의 집전이 주교에게 유보된다는 점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1986)에서보다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4조(견진집전자)는 “견진성사의 통상적 집전자는 교구장이다. 사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고 견진성사를 집전한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제66조(집전자)는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1항)라고 말한 후,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2항)라고 덧붙인다.

132)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제정한 이유를,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1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른 예비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교가 어른 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가 제정되었다.”

133) 견진 집전을 주교에게 유보시키는 규정을 제정한 이유를,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1995, pp.133~13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른 영세자들이 대체로 간략한 세례예식으로 세례를 받고, 그 후에는 신비교육의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세례와 견진의 두 성사 사이에 신

전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라틴 예법에서 주교 자신이 이 성사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며, 견진성사의 거행이 세례성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이유가,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았기에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 받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회의 사도적 기원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이 성사의 효과임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¹³⁴⁾ 그 때문에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를 사제가 모두 집전하는 동방 교회의 전통과는 달리, 라틴 교회에서는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⁵⁾

그렇지만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과 ‘성사받을 신자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입문 성사들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을 걷고 있는 예비신자들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연속적으로 거행되는 성사들이며, ‘세례성사는 견진성사로 완성(완결)되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성체성사로 완성(완결)

비교육의 과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 어린 영세자가 유아 영세자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영세자들이 모두 탁덕한테서 견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면, 결국 교구신자의 대다수가 주교와 성사적으로 아무런 유대도 맺지 않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교가 세례와는 별도로 견진성사를 집전할 때 어린 견진자들이 어린이 견진자들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어린 견진자들의 체면이 손상될 리가 없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영세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견진까지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견진성사는 소수의 유아 세례자들만이 따로 받게 되고, 따라서 7성사 중에 견진성사는 도외시될 우려도 있다. [...] 그러므로 한국주교회의는 어린 세례의 경우에도 세례는 탁덕이 집전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도록 결정하였다.”

134)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3항: “필요한 경우 주교는 사제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이 성사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며, 견진성사의 거행이 세례성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이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았다.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 받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회의 사도적 기원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이 성사의 효과임을 잘 나타낸다.”

135) “동방 교회의 관습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입문의 단일성을 더 잘 보여 준다. 라틴 교회의 예식은 새 신자들과 주교의 일치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92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8항도 참조하시오.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은 세례, 견진, 성체성사 순으로 거행됨이 마땅하다.¹³⁶⁾ “성찬례는 분명히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이므로, 예비신자들은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인도되고, 이미 거룩한 세례와 견진으로 인호를 받은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결합된다.”¹³⁷⁾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를 완결 짓는다. 세례성사로 왕다운 사제 품위에 올려지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은 성찬례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다.”¹³⁸⁾

같은 의미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권고 『사랑의 성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찬례가 참으로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이라면,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은 언제나 성체성사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사 생활의 중심이자 목표가 됩니다.¹³⁹⁾

136) 참조: Pierpaolo Gaspani, “La categoria di iniziazione cristiana nel dibattito della teologia sacramentale contemporanea”, in Associazione Canonistica Italiana, *Iniziazione cristiana: profili generali*, Glossa, Milano, 2008, pp.23~31. Gaspani는 세례성사는 성체성사의 ‘문’이고, 견진성사는 성체성사를 받기 위해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것이며,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의 ‘도착점’이라고 말한다.

137) 『사제 생활 교령』 5항. 또한 『일치교령』 22항: “그러므로 세례는 완전한 신앙의 고백,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구원의 제도로 들어가는 완전한 합체, 마침내 성찬의 친교를 나누는 완전한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138) 『가톨릭교회 교리서』 1322항. 또한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2항: “사람들은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며, [...]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 견진성사로 성령 특유의 날인을 받아 더욱 완전히 주님을 닮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성찬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보편 제사에 참여한다. [...]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입교 성사들은 서로 결합되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해 준다.”

139)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2.22., AAS 99(2007), 105~180, 17항.

이처럼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의 관계 안에서, 총체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구조 안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초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문 성사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입교 과정 전체의 목적인 성체성사를 중심에 놓도록 하는 데에 어떤 관습이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교 회의들은 교황청 관할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그리스도교 입문 방법의 효율성을 점검함으로써, 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받은 양성을 통하여 성숙해 가고 그들 삶이 참된 성찬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 안에 지닌 희망의 이유를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1베드 3,15).¹⁴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거행한다면,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영성체를 하게 되며, 이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거행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 된다.¹⁴¹⁾ 이를 방지하고자 현행 교회법 제866조는 “세례받는 어른(adultus)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¹⁴²⁾ 『어른 입교 예식』 역시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세례와 견진과 영성체’를 순서대로 한 번에 거행할 수 있는 예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¹⁴³⁾

140) 같은 책, 18항.

141) 앞서 보았듯이 동방교회들에서는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세례받은 후 즉시 견진(거룩한 미론의 도유)을 받고 영성체를 한다. “동방 교회 신자들에게는 견진성사(거룩한 미론의 도유)가 영성체 후에 거행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Dimitrios Salachas, 앞의 책, p.187).

142)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이유’는, 예를 들어,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거행할 때 집전자인 사제가 축성 성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축성 성유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 심각하여 견진 거행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혹은 세례 집전자가 사제가 아닌 부제나 평신도여서 견진을 거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참조: Elias Frank,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i 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UP, 2012, p.64, 각주 17).

다른 한편, 교회법 제866조를 달리 해석하면,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받은 어른은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이유가 없는 데도 견진 수여를 미룬다면 이는 보편법이 명시하고 있는 신자들의 성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¹⁴⁴⁾

3. 견진 적령 문제

보편법은 세례를 제외한 다른 성사들과 관련하여 연령 제한을 둔다.¹⁴⁵⁾ 특히 견진성사와 관련하여서는,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¹⁴⁶⁾ 또한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¹⁴⁷⁾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143) 『어른 입교 예식』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식들 즉, “제1장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과 “제2장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 그리고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에서, “주교가 세례를 주었을 때에는 곧바로 견진까지 직접 거행하는 것이 좋다. 주교가 없을 때에는 세례를 베푼 신부가 견진을 줄 수 있다”(각각 228항, 267항, 362항)라고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죽을 위험 중에 사용하는 “제5장 임종 세례”에서도 “신부가 세례를 준다면 그가 견진도 줄 수 있다”(293항)라고 말한다.

144) Elias Frank는 교회법 제866조를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타깝게도 선교법을 따르는 지역들에서 이 규범이 늘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제가 어른들에게 세례만 베풀고 견진은 생략한다. 견진은 나중에 주교가 집전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들의 견진성사가 청소년기로 미뤄진다. 이러한 관행들은 제866조에 언급된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다”(앞의 책, p.64, 각주 17).

145) 보편법상, 고해성사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부터’(교회법 제989조) 그리고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에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교회법 제1004조). 성품성사는 23세(부제품), 25세(미혼 종신 부제품, 탁덕품), 35세(기혼 종신 부제품, 주교품)에 이르러야 적법하게 받을 수 있고(교회법 제1031조, 제378조 제3호), 혼인은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에 이르러야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교회법 제1083조. 다만 주교회의는 혼인을 맺기에 적법한 연령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다).

146) 교회법 제891조. 이 조문은 ‘수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여되어야 한다’(conferatur)라고 말한다. 이는 영혼들의 목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해당한다.

147) ‘올바르게 준비하다’(esse rite dispositus)는 ‘은총의 상태에 있다’(esse in statu gratiae

다.¹⁴⁸⁾

앞서도 언급했듯이, ‘분별력을 가질 나이’는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와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와 동일시되므로 만 7세를 가리킨다.¹⁴⁹⁾ 따라서 보편법에 의하면 견진을 ‘적법하게’(licite)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7세이다.¹⁵⁰⁾ 그러나 많은 주교회의는 교회법 제 891조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각 지역마다 별도의 견진 적령을 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편법보다 더 높은 12세에서 15세 사이로 정하였다.¹⁵¹⁾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역시 견진 적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하였다.¹⁵²⁾

대다수 주교회의가 견진 적령을 만 7세보다 높게 정한 것은 실천적인 이유 즉, 청소년들의 교리교육 양성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다.¹⁵³⁾ 『견진 예식』 지침 11항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삶에서 주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확고한 증언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주교회의는 “더 적절해 보이는 나이를 결정할 수 있

constitutus)는 것을 뜻한다. 1917년 『교회법전』은 ‘은총의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제786조). 그러나 이는 법적 표현이라기보다 신학적 표현이기에 법전 개정위원회는 ‘올바르게 준비하다’라는 말로 바꾸었다[참조: *Communicationes* 31(1999), 73~74].

148) 참조: 교회법 제890조.

149) 『견진 예식』 지침 11항은 “어린이들과 관련하여, 라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견진 집전을 대략 7세까지 미루고 있다”라고 명시한다. 1917년 『교회법전』 제788조도 참조하십시오.

150) 만 7세는 교회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나이이다. 일반 규범인 제11조에 따르면, 법으로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때부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151) José Tomás Martín De Agar-Luis Navarro, *Legislazione delle Conferenze episcopali complementare al C.I.C., Coletti a San Pietro, Roma*, ²2009를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p.205~206에서 재인용.

152) 참조: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제67조. 많은 주교회의가 보편법에서 요구하는 나이보다 더 높은 견진 적령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모든 주교회의가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그 적령을 일률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교회의가 정한 적령과 보편법이 규정한 적령(만 7세) 가운데 교구장 주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곳도 있다(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p.205~206).

153) 참조: Elias Frank, 앞의 책, p.18;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p.206~207.

다. 이렇게 하여 더 성숙한 나이에 알맞은 교육을 받은 다음 이 성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견진받을 자’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명시하고 있듯이, “때로 견진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라고 하지만, 신앙의 성년과 자연적 성장의 성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¹⁵⁴⁾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견진성사의 효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한다.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이다.”¹⁵⁵⁾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신앙에서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이다.”¹⁵⁶⁾ 현행 『교회법전』 제890조가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다면, 신자들이 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게 돌볼 의무는 교회에 있다. 그 때문에 교회법 제890조는 신자들의 견진받을 의무를 천명한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르게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¹⁵⁷⁾ 특히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¹⁵⁸⁾

견진성사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154)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308항.

155)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6항. 교회법 제879조도 참조.

156)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207.

157) 참조: 교회법 제777조 제2호: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2.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째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할 것.”

158) 교회법 제885조 제1항.

바라본다면, 견진 거행이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편법은 첫영성체를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나이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즉, 만 7세라고 규정한다.¹⁵⁹⁾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높은 ‘10세 전후’로 정해 놓고 있다.¹⁶⁰⁾ 실제로 많은 본당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첫영성체 교리를 실시한다. 첫영성체 반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아직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함께 교리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10세의 어린이가 교리교육을 받고 영성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견진 적령인 만 12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세례성사—견진성사—성체성사’라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뒤바뀌는 것이다.¹⁶¹⁾ 또한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 중에 거행되어야 할 입문 성사들 가운데 견진성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입문 과정’을 ‘완결’하지 못하게 된다.¹⁶²⁾

159) 참조: 교회법 제914조.

160)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제82조(첫영성체): “1항.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항.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61) 『어른 입교 예식』의 “제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와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은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를 차례대로 거행하도록 예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5장 교리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은 “주교가 없을 때에는 세례를 베푸는 신부가 견진을 줄 수 있다”(362항)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 성사성의 1932년 6월 30일 답변[*Sacra Congregatio de Sacramentis, De aetate confirmandorum*, AAS 24(1932), 271-272]은 흥미로운 내용을 싣고 있다. 1917년 『교회법전』 제788조가 견진받을 나이를 “대략 7세”라고 규정했을 때,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견진을 수여하던 지역 관습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지를 사도좌에 문의하였다. 이에 성사성은 지역 관습이 보편법에 어긋나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보편법 규정을 점차 적용해 나갈 것과 견진 수여가 첫영성체보다는 선행되어 세례—견진—성체성사의 논리적 순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162) 『견진 예식』 지침 3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받은 이들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하느님 백성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세례받은 모든 이가 견진성사를 받게 정성껏 준비시켜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을 완

다른 한편, 만 7세 이상부터는 ‘순수한 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¹⁶³⁾ 첫영성체를 한 다음부터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하고¹⁶⁴⁾ 자기의 중죄를 고백해야 할¹⁶⁵⁾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교회법적인 차원에서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교회 내에서 특정 ‘신분’(status)을 취하거나 ‘특수 임무’(munus)를 수행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합법성을 위한 조건을 구성한다.¹⁶⁶⁾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¹⁶⁷⁾인 견진성사를 적절하고 합당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견진 적령과 견진 거행 방법 및 시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제언

예식의 측면에서든 시간적 차원에서든 세례와 견진을 분리해서 거행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¹⁶⁸⁾

전히 마치도록 배려해야 한다.”

163) 참조: 교회법 제11조.

164) 참조: 교회법 제920조 제1항.

165) 참조: 교회법 제989조.

166) 예를 들어, 견진성사는 대신학교 입학(제241조 제2항), 수련원 입회(제645조 제1항), 사도 생활단 입회(제735조 제2항), 부제품 승격(제1050조 제3호), 적법한 성품 승격(제1033조), 혼인 거행(제1065조 제1항), 세례와 견진의 대부모 임무 수행(제874조 제1항 제3호; 제893조 제1항)에 요구된다.

167)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6항.

168) 예를 들어, 현행 교회법은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규정한다(제893조 제2항). 『견진 예식』 지침 5항은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오늘의 사목 환경으로 보아 세례 때의 대부모가 있다면 그대로 견진 대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연계가 더욱 명백해지고 대부모의 임무와 직무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른 입교 예식』 299항도 참조하시오. 세례와 견진이 함께 거행된다면 세례와 견진 대부모 임무는 같은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선 본당에서 견진 대부모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어른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많지만, 견진받은 어른 신자들이 많지 않기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보편법이 신자들에게 인정하고 있는 ‘성사받을 권리’를 합당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견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지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견진 집전자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법 규정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법 제883조 제2호에 규정된 것처럼,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는 탁덕”이 “법 자체로” 받고 있는 견진 집전 특별 권한을,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¹⁶⁹⁾는 규범과 “세례받은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¹⁷⁰⁾는 규범이 온전히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견진의 정규 집전자가 주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견진 예식』 지침 18항은 “비정규 집전자가 보편 법의 허용에 따라 또는 사도좌의 특전을 받아 견진을 줄 때, 그 집전자는 강론에서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라는 것과 법에 따라 또는 사도좌의 특전으로 신부들에게도 견진 집전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두 번째로 견진 적령 문제와 관련하여, 만 7세 이상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리교육이 필요하다면 현행대로 견진 적령을 만 12세를 하되, 각 교구장 주교가 사목적 판단에 따라 관할 교구 내에서의 견진 적령을 달리 정하거나 혹은 보편법 규범을 따를 수 있도록, 주교회의 차원에서 유연한 규범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¹⁾ 그렇게 한다면 보편법이 신자들에게 인정하고 있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신자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견진 대부(모) 임무를 맡기도 한다.

169) 교회법 제842조.

170) 교회법 제866조.

171) 예를 들어, 스페인 주교회의는 견진 적령을 대략 14세로 정하면서도, 각 교구장 주교가 보편법의 규범(‘분별력을 가질 나이’ 즉 만 7세)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참조: Tomás Rincón-Pérez, 앞의 책, p.206).

는 ‘성사를 청하고 받을 권리’¹⁷²⁾도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 14세 이상의 어른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집전한 탁덕이 견진까지 줄 수 있게 한다거나, 견진 적령을 각 교구장 주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세례와 견진을 받을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예비신자들이 법이 요구하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례와 견진을 받을 사람의 의무라기보다는 사목을 위탁받은 거룩한 교역자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보다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을 더욱 장려함으로써 예비신자들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교리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¹⁷³⁾

VI. 나가는 말

교회는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인 성사라는 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세례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유효한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합체된 ‘사람’(homo)은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idelis)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하나의 인격체’(persona)가 된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

172) 참조: 교회법 제212조 제2항 및 제213조, 제843조.

17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제63조(세례 예식) 2항은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간략한 입교 예식’보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선호하면서 장려한다. 그러나 ‘간략한 입교 예식’을 따를 때라도, 『어른 입교 예식』 “제2장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240~277항)에서 세례 후에 견진과 영성체를 연속적으로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고,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교회는 죽을 위험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이러한 필요를 교회의 목자들에게 청하기도 전에 그에게 견진을 수여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주고, 그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게 해 준다.

다른 한편,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와 함께 견진과 영성체를 거행해 주는 교회의 오랜 전통은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이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의 성사들’로서의 ‘단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단일성이 전례 거행 차원과 사목 실무 차원에서도 합당하고 올바르게 구현되기를 바란다. 만일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해야 할 사명’을 맡은 이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¹⁷⁴⁾

174) 『전례현장』 59항.

[참고 문헌]

-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9, Pars II, 1917, 11~456.
-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75, Pars II, 1983, 1~3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AAS 82(1990), 1061~136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08.
-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3.
-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2.22., AAS 99(2007), 105~18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경신성사성,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유아 세례 예식』(*Ordo Baptismi Parvulorum*), 1973(제2표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제1판 1쇄).
- _____,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어른 입교 예식(시안)』(*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1974(표준판[수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1판 1쇄).
- _____, 『로마 주교 예식서』(*Pontificale Romanum*), 『견진 예식(시안)』(*Ordo Confirmationis*), 1971(표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제1판 1쇄).
- _____,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병자 성사 예식: 병자의 도유와 사목적 배려 예식(시안)』(*Ordo Unctionis Infirmorum Eorumque Pastoralis Curae*), 1972(표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1판 1쇄).
- _____,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고백성사 예식서』(*Ordo Paenitentiae*), 1974(표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중판).
- _____, De aetate confirmandorum, AAS 24(1932), 271~272.
- _____, “Litterae Congregationis”(Prot. N. 2607/98/L), 1999.12.18., Nuntia 35 (1999), 537~540.
- _____,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회피해야 할 일부 문제들에 관한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3.25., AAS 96(2004), 549~601.
- 성직자성, 평신도평의회,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수도회성, 교회법해석평의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Ecclesiae de Mysterio*), 1997.8.15., AAS 89(1997), 852~877.

교회법해석평의회,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 허용에 대한 선언』, 2000.6.24., L'Osservatore Romano, 2000.7.7., p.1; *Communications* 32(2000), 159~162.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Hongkong, 1932.

『한국 지역 교회 법전 I』(수정·보완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3.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1986).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수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주교회의의 천주교용어위원회 편찬, 『천주교 용어집』(개정 증보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7.

벨라시오 데 파울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정진석, 『교회의 성사법』, 교회법 해설 7(제834~1054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_____,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Associazione Canonistica Italiana, *Iniziazione cristiana: profili generali*, Glossa, Milano, 2008.

Dimitrios Salachas, *L'iniziazione cristiana nei Codici orientale e latino*, EDB, Bologna, 1991.

Elias Frank,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 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UP, 2012.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II, ³2011.

Tomás Rincón-Pérez, *La liturgia e i sacramenti nel diritto della Chiesa*, EDUSC, 2014.

국문초록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은총을 거저 베풀어주신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을 무상으로 전달할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특히 성사 집전을 통해 이 사명을 수행한다.

성사 거행에 관한 현행 교회법과 전례법 규정은 교회가 특히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돌보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는 이미 신자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집전되는 병자 성사와 고해성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불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필수적인 세례성사만이 아니라,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도 함께 집전해 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교회법과 전례법 규정은 단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을 올바로 거친 사람들에게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단일한 전례 예식 안에서 집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과 ‘신자들의 성사받을 권리’라는 신학적이고 법적인 이유 때문이다. 즉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모든 성사의 정점인 성체성사를 향해 나아가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며, 성사들의 문인 세례성사는 다른 성사를 받을 합당한 자격과 준비를 하고 또 이를 올바른 지향으로 요청하는 신자들에게 성사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본 소고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시간상 분리해서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천주교회의 현행 지침 특히 견진 집전자와 견진 적령에 관한 지침을 재고하여, 이를 현행 보편 교회법과 전례법 규정과 부합한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 주제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신자들의 성사받을 권리, 죽을 위험 중.